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제 목 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 요구 개선 권고
사 건 15진정0744500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의한 인권침해

주 문

1. 000교육청 교육감에게, 감사 시에 사실 확인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위서에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기로 한다.

이 유

I. 권고 배경

감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15진정0744500)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나, 감사 상 사실 확인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이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해 검토하게 되었다.

II.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 고00

나. 피진정인 : 최00

다. 진정요지 : 000교육청 감사실에서 000000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축구부 불법찬조금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했는데 경위서 양식에는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향후 진정인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등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000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2015. 8. 19. 이 사건 학교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불법찬조금, 불법기숙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민원제보와 통장 입금 기록, 학교 축구부 학부모회의 녹취록 등 증거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다. 이에 000교육청 감사관 조사2담당 사무관 박00, 행정6급 최00(피진정인)은 같은 달 27.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등 학교 관리자를 면담하고 축구부 운영 등에 대한 감사 착수 예정임을 알리면서 제보자 보호를 당부하고 교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때 별도의 서식을 지정하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

나 진정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

나. 그런데, 같은 달 28. 교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자료에 일부 사안이 누락되어 피진정인은 같은 달 31. 교감을 통해 같은 해 7. 14. 열린 당시 학부모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위서 서식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는 회신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해 9. 7. 실시된 현지조사에서 진정인은 감사관실에서 2차 자료로 요구한 경위서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에게 항의하였고 현지에서 진정인의 항의내용을 즉시 수용하여 감사를 진행한 바, 감사 중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개인주소 등을 수집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한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000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2015. 8. 19. 이 사건 학교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고, 같은 달 27. 피진정인 등이 위 학교를 방문하여 감사 착수 예정 사실을 알렸다.

2) 그리고 같은 날 위 학교를 통해 진정인에게 같은 해 7. 14. 개최된 운동부 학부모회의에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토록 요구했고 같은 해 8. 28. 이메일을 통해 진정인이 작성한 회의 내용을 받았으나 부실하게 작성되어 피진정인은 위 학교를 통해 진정인에게 학부모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다시 요구하면서 경위서 양식을 송부하였다. 메일로 송부된 경위서 양식에는 ‘주소, 소속, 직위 및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총 재직기간, 당교 발령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3) 진정인은 위 양식에 따른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5. 9. 8. 현장 감사 시 경위서 대신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사실확인서에는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당교발령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피진정인이 1차 자료 요구시 특별한 서식을 지정하지 않았고, 2차 자료 요구시 첨부한 경위서에 대하여 진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진정에 대해서는 각하하기로 한다.

Ⅲ. 이 사건 감사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1. 이 사건 감사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에 대한 검토

가. 피진정인 및 000교육청은 감사상 사실 확인 목적으로 개인식별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포함된 경위서를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000교육청에서 법률적 근거로 들고 있는 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자체 감사를 위해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대상에 대하여 경위서 등을 통한 서면 형식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보인다. 그런데 위 법조항은 답변 형식이나 답변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마.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은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감사대상 기관 등의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받은 관계서류·장부 등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대한 고유식별정보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변경이 어려운 바, 한 번 유출될 경우 그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법 제24조의2).

다. 000교육청의 주장처럼 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위서에 작성자의 개인식별을 위해 기본적인 정보들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작성자의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정도만으로도 개인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참고로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 서식인 확인서 양식에도 인적사항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정도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000교육청이 단순히 작성자 본인확인을 위해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라면, 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사. 아울러 000교육청은 개별 구체적인 각 감사 사무에 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고유식별정보로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위서 양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아. 따라서 위 조항들을 근거로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이라는 000교육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그동안 000교육청에서 감사상 사실확인 목적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고 향후에도 사용하게 될 경위서에 고유식별정보로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기반을 두고 보장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000교육청으로 하여금

이런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23.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이 은 경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